

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결과

회 차 : 제 619회 예비심사

안전번호 : 제 2018-108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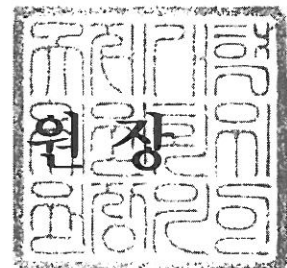
안 건 명 :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

위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붙임과
같이 심의·의결 하였음.

붙 임 : 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제
심사 결과

2018. 03. 19.

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



<붙임>

「자동차용 내압용기 안전에 관한 규정 개정안」 규제심사 결과

규제 내용	심사 결과
<p>1. 압축천연가스(CNG) 및 액화석유가스(LPG) 내압용기 검사기준 등 강화(강화)</p> <p>1.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의 균열 또는 결함으로 내용물 유출 시 무조건 누출로 판단(단, 용기 특성상 정상적으로 투과하는 투과성능시험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누출에서 제외)</p> <p>
</p> <p>
2.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 제조검사시 환경시험절차에 압력반복시험과 압력유지를 거친 후 파열시험을 추가</p> <p>
</p> <p>
3. 압축천연가스 내압용기 최대 충전횟수 규정 신설</p> <p>
</p> <p>
4. 액화석유가스 내압용기 설계검사항목에 밸브 또는 안전장치의 설계 변경시 화염시험을 추가</p>	<p>< 비중요 규제 ></p>